

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2020.06 Vol.1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

1. 파양동물 이용 신종펫숍의 확산

A.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업체가 반려동물 파양시 고액의 보호비를 청구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 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수차례

보도¹

B. 일부 업체의 경우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소’, ‘동물 요양 보호소’, ‘동물 쉼터’ 등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동물보호소와 혼동할 수 있는 문구들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영리목적의 상행위에 불과

C. 한 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16개 지점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매출액만 연

600~800억 원에 달하지만 관련 규제는 전무한 상황으로 피해 확산 우려

2. 파양동물 이용 영업의 구조와 문제점

A. 영업 구조(수입원)

¹ TV조선, 4월 27일자 보도 “[CSI] 유기견 준다더니 가보면 "개 사세요"...애견숍 '미끼 상품'"
한국일보, 5월 4일자 보도 “파양한 반려동물로 돈벌이...죄책감 악용하는 신종 펫숍들”
한국일보, 5월 5일자 보도 “[고은경의 반려배려] 반려동물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SBS, 5월 15일자 보도 “수상한 소문 - 유기견이 미끼 상품? 안락사없는 보호소의 진실”
KBS, 5월 17일자 보도 “파양 반려동물 맡아준다더니...”오물 속 방치되고 아사하기도“

(1) 해당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 하게 된 이들이나 구조동물

등의 보호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동물을 파양받아 보호 및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쉽게 말해 입양 중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음. 파양비는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며, 파양동물을 입양 보낼 때는 입양자로부터 다시 책임비를

수취. 새로운 입양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입양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별도의

파양비를 청구

(2) 대부분의 신종펫숍 업체들이 입양 중개와 함께 펫숍을 함께 운영하며 유기견 입양을

반려동물 판매의 홍보수단으로 활용

(3) 일부 업체는 보호 중인 동물을 보려는 이들에게 일정액의 입장료를 받기도 함

B. 해당 영업의 문제점

(1) 파양 후 동물에 대한 정보 미제공

동물자유연대가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신종펫숍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유형은 파양동물 또는 구조동물을 업체에 맡긴 이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임. 파양 계약서 상 파양 후 관련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포함해 동물을 맡긴 이들이 적지않은 금액을 보호비(위탁비)로 지불했음에도 해당

동물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는지, 입양을 갔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구조임. 파양

후 수일만에 변심해 파양을 철회하고자 했으나, 해당 동물의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 파양동물이 입양된 경우에도 입양되었다는 업체의 주장만

존재하고 이후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2) 관리부실 및 방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공간, 사료 및 물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청소 및 건강상태 체크, 산책 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물 속에 방치되거나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동물에게도 일반 사료만을 공급해 아사하는 사례도 발생. 소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에서 파보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리기도 하며, 질병 발생시 의사에 의한 치료 대신 직원들에게 돌보게 하거나 자가진료만 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음. 치료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도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예방접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입양 후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이유로 다시 데려간 후 그대로 방치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접수

(3) 검증절차 없는 입양 중개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입양시 입양 희망자에게 동물을 키울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려동물 양육 경험, 보호능력, 가족의 동의여부 등에 대해

상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신종페츨의 경우 이러한 설명 및 확인 과정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며, 입양이 되지않는

개체의 경우 오히려 입양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짐.

제대로 된 검증없이 입양이 이루어지다보니 입양 후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 또한 입양자에게도 건강상태 및 질병여부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입양 후 선천적 질병이나 전염병 등에 걸려 있는 사례들이 보고됨

(4) 보호동물을 미끼로 한 분양영업

동물자유연대 입양절차 및 입양자 선정 기준



신종펫숍의 수입은 주요 동물 파양시 파양자로부터 수취하는 보호비(위탁비)와 일반

동물 판매수익으로 이루어짐. 선의로 파양 및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위해 방문한

이들에게 분양 중인 어린 개체를 보여주며 펫숍의 동물을 구매하도록 유도

(5) 관련 법의 부재

영업이 확산되는 만큼 관련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 동물보호법 상 파양 및

입양중개 업체에 대한 규정 부재.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경매 포함),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규정.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 또는 허가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짐.

하지만 신종펫숍은 동물판매업만을 등록한 채로 영업중이며, 파양 및 입양중개에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도 없어 영업에 대한 관리는 물론 영업규모 등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

(6) 관리부실에 대한 유인기제

신종펫숍은 파양동물의 보호기간이 길어지거나 보호수준을 높일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하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음. 때문에 업자들은 파양된 동물에
대해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입양과정에서 적절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진행하려는 유인기제 존재. 실제 재입양이 어려운 파양동물의 경우 업체에서
소액을 주고 양육능력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 보낸 사례도 보고됨

3. 반려동물 파양 규모 및 전망

A. 반려동물 파양 규모 및 원인

(1) 파양규모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에 대한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해 진행하고
있지만 파양인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의 경우, ASPCA가
Open Journal of Animal Sciences(2015)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년간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파양한 가정은 612만 가구에 이르며, 이는 매년 평균 100만 가구 이상이
양육을 포기했음을 의미 (미국의 경우 전체 가정의 44%가 개를, 35%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됨)

(2) 파양의 원인

ASPCA의 연구에서 주요 파양 원인은 공격성(16.1%), 행동문제(13.3%),

건강문제(의료비 포함)(12.0%), 가족의 건강이상(11.9%), 알러지(6.5%),

월세(7.7%), 공간부족(7.0%) 등으로 나타남. 국내의 경우에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46.6%), 비용이 많이 듭(32.6%), 매너 교육이 어려움(14.3%),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항의(10.9%) 등을 응답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문제행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주변과의 갈등, 경제적 부담, 거주지의 이전 등이

파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B. 향후 전망

(1) 2019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6.4%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약 591만 가구로 추정됨. 2018년 대비 약 2.7% 상승함.

2018년을 제외하고 반려동물 양육률은 대체로 증가(농림축산식품부, 2019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 2인 가구의 증가 및 미국의 양육률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반려인구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

(2)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13만 5,791마리를 기록.

반려인구가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계속되는

유기문제로 인해 동물보호법상 유기행위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1년 2월부터 시행 예정

(3)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기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

파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

4. 신종펫숍 난립을 막기 위한 대안들

A. 해당영업의 금지

(1) 신종펫숍의 난립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은 법으로써 해당 영업을

금지하는 것임. 영리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하고, 이와 함께 유기 및 파양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육포기 인수동물 인수제 등 사회적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영업 금지의 필요성

a. 반려동물 분양 및 파양에 대한 안일한 인식 확산 우려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사람 중

54.5%,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중 43.9%가 반려동물의 행동, 습관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반려가정에서 1년 간 평균 25.5만원 이상

동물병원비를 지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중 상당수가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에

따른 어려움과 동물병원비용 등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복수응답, 단위:%)	배설물, 털 등 관리가 번거롭다	위생상 좋지않고 냄새가 난다	손이 많이 간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때 대처가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든다	매너 교육이 어렵다 (배변교육 등)	소음으로 주변의 항의가 들어온다	외출하기 어렵다	여행가기 힘들다	기타	특별히 힘든 점은 없다
전체	43.1	20.6	31.7	36.6	32.6	14.3	10.9	27.9	37.3	0.3	7.6

개 양육자 77.8%
고양이 양육자 60.2%가
최근 1년 내 동물병원 방문

반려가정에서 1년간
평균 25.5만원 이상
동물병원비로 지출

그럼에도 최근 유기·유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이 확산될 경우 반려동물의 파양에 대해 쉽게 생각하거나 책임감 없이 동물을 사고, 버리는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

b. 반려동물 영업의 관리부실

영업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관련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7,155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2만 2,555명에 달함. 2018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7.2%, 종사자는 35.8% 증가한 수치임.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2월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업체와 서울 충무로, 부산 양정동, 수원 남문 등 전국의 주요 펫숍 밀집지역의 업체 31개를 샘플링해 조사한 결과 동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2019년 조사에서는 50개 업체 중 49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발견. 그럼에도 지자체가 시행하는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해당 지역에서 단 한 곳만이 적발되었으며, 2020년에 부산

진구가 4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긴 업체가 한 곳도

없다고 되어있으나, 동물자유연대의 조사에서는 6개 샘플업체 모두에게서 미준수

사항이 발견됨. 결국 신종페습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단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B. 관련 규정 정비 및 관리

(1) 파양 불가시 방치 및 유기 가능성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경에 처할 가능성

또한 상존. 현재로서는 반려동물을 더이상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양육한계가정이 주변 지인 혹은 제3자에게 재입양을 보내거나 분양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동물이 학대를 당하거나

의도된 방임/방치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유기 가능성 또한 존재. 신종페습의

문제는 입양 중개 자체보다는 관련 규정의 부재와 이 틈을 파고든 업자의 상술과

비윤리적, 기만적 영업형태에 기인한 바가 큼. 따라서 더 이상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동물보호센터 입소, 입양 중개업체 입소 등 반려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양육포기동물을 수용(비용은 단체별, 지역별로

상이하며 Animal Humane Society의 경우 마리당 \$50 정도의 비용 청구, SPCA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는 마리당 \$60, 고양이는 \$40(마이크로칩이 없는 경우 \$100 추가 비용발생), SPCA 플로리다는 개250\$ 정도, 고양이는 \$210 정도 청구)

(2) 신종펫숍 규제 방안

a. 사설 동물 보호소의 법적 지위 부여

신종펫숍들은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소’, ‘동물요양보호소’ 등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펫숍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포장. 동물구조 및 보호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보호소’라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경우 이를 혼동하기 쉬움. 따라서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중개업체와 일반적 의미의 사설 동물 보호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주에서는 법률에서 사설보호소를 규정하고 있음.

버지니아주는 사설 보호소를 “동물을 수용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 동물 복지 단체, 비영리 단체 및 비정부 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로 동물 또는 동물을 위한 영구 입양 가정을 찾기 위해 운영되는 기타 조직”(Va. Code. Ann. § 3.2-6500)²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의 사설 동물 구조기관은 공공 보호소와 마찬가지로 주 수의사 및 각 주 수의사의 검사를 받음(Va. Code. Ann.

§ 3.2-6502)

² a facility that is used to house or contain animals and that is owned or operated by an incorporated,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entity, including a humane society, animal welfare organizatio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or any other organization operating for the purpose of finding permanent adoptive homes for animals” (Va. Code. Ann. § 3.2-6500)

네브래스카 주 역시 공공 및 민간의 보호소를 구별. 공공 보호소를 “유기·유실

동물, 피학대 동물, 양육 포기 동물을 압류하거나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계약된 시설”로 정의(Neb.§ 54-626 (1))³하는

반면 사설 보호소는 “동물 보호소로 동물 복지단체 등이 운영 또는 유지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Neb. § 54-626(3))⁴

b. 동물보호법상 관련 영업 규정 신설

현재 동물보호법상 가장 유사한 영업의 형태는 동물위탁관리업이지만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유권을 양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신종펫숍과는 차이가 있음. 신종펫숍과 같은 형태의

영업에서는 맡겨진 동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가급적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때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파양자에게는 보호 및 필요한 경우

³ a facility operated by or under contract with the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impounding or harboring seized, stray, homeless, abandoned, or unwanted animals” (Neb. § 54-626(1))

⁴ a facility used to house or contain dogs or cats and owned, operated, or maintained by an incorporated humane society, an animal welfare society, a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or another nonprofit organization devoted to the welfare, protection, and humane treatment of such animals” (Neb. § 54-626(3))



치료내역을 제공, 입양자에게는 해당 동물의 질병유무, 이상행동 유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필요



[참고문헌]

Kristen Pariser, Detailed Discussion of the Laws Regulating Rescue and Foster Care

Programs for Companion Animals,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2014

Emily Weiss, Shannon Gramann, C. Victor Spain, Margaret Slater, Goodbye to a Good Friend: An Exploration of the Re-Homing of Cats and Dogs in the U.S., Open Journal of Animal Sciences Vol.5 No.4, 2015*

농림축산식품부, 2019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펫사료협회,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참고 사이트]

<https://www.animalhumanesociety.org/surrender/surrendering-pet>

<https://www.ccspca.com/faq/surrendering-your-pet-faqs/>

<https://www.spcaflorida.org/pet-surrender>